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문대림 · 이상식
황명선 · 이개호 · 한민수
이성윤 · 강준현 · 이수진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희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,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.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·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·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일본은 「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」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,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.

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경제조직,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·집약화를 촉진하고,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,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

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·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.

주요내용

- 가.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(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의2).
- 다.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(안 제40조의4).
- 라.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(안 제40조의5).
- 마.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(안 제40조의6).
- 바.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40조의8).
- 사.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(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).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
시·도지사는 농지의 집적·집약화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보유합리화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
2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중 농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4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6. 「민법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

③ 법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한다.

제40조의3(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법인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농지 매입·임대 계획
2.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
3. 재정 운용 계획
4.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계획

③ 사업계획의 수립·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4(사업)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농지의 매입 및 보유
2. 농지의 임차 및 재임대
3. 농지의 교환 및 분합
4. 유휴농지의 활용 사업
5.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사업
6. 지역공동체 영농 활성화 사업
7.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운영
8. 공동영농사업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야

한다.

③ 동일 농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간 중복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5(농지의 우선 공급) ① 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1. 청년농업인
2. 후계농업경영인
3. 귀농인
4. 공동영농조직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 조직

②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농지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0조의6(농지취득자격증명의 특례) ①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0조의7(농지의 이용 및 처분) ① 법인은 보유 농지를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하여서는

아니 된다.

② 법인은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처분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8(재정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농지구입자금의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9(평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의 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10(지정취소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
3. 농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0조의2(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농지의 집적·집약화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보유합리화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.</u> <u>1.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</u> <u>2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중 농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</u> <u>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</u> <u>4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</u> <u>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</u> <u>6. 「민법」에 따라 농림축산식</u>

<신 설>

<신 설>

품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
비영리법인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법인

③ 법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3(사업계획의 수립 등)

① 법인은 사업계획을 수립하
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
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
아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
포함되어야 한다.

1. 농지 매입·임대 계획
2.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
3. 재정 운용 계획
4.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계
획

③ 사업계획의 수립·승인 절
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4(사업) ① 법인은 다음
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
다.

1. 농지의 매입 및 보유

<신 설>

2. 농지의 임차 및 재임대

3. 농지의 교환 및 분합

4. 유휴농지의 활용 사업

5.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사업

6. 지역공동체 영농 활성화 사업

7.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운영

8. 공동영농사업
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동일 농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간 중복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5(농지의 우선 공급) ① 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1. 청년농업인

2. 후계농업경영인

3. 귀농인

<신 설>

<신 설>

4. 공동영농조직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 조직

②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농지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0조의6(농지취득자격증명의

특례) ①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0조의7(농지의 이용 및 처분)

① 법인은 보유 농지를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② 법인은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처분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8(재정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농지구입자금의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

<u><신 설></u>	<u>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40조의9(평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.</u> <u>② 평가의 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40조의10(지정취소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</u> <u>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</u> <u>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</u> <u>지정을 받은 경우</u> <u>2.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</u> <u>3. 농지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</u> <u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